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(안)

의안	1
번호	

발의년월일 : '95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정이유

충청북도 체육회가 기부채납조건으로 충청북도잠종장 부지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건립한 충청북도체육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『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』를 제정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본도 체육발전을 도모코저 함

2. 주요골자

- 도 체육회관을 기부채납 당사자인 도체육회장에게 위탁관리·운영토록 함
- 이 조례 및 기타 도지사의 명령처분 위반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음
-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,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목적외 사용, 비용 징수등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도지사는 회관 운영 사항을 조사·검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함

첨 부

1. 제정조례(안) : 별 첨
2. 근거법령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북도 체육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치) 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방서동 38-1번지에 둔다.

제 3 조 (기능)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편의제공
2.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 조성
3. 기타 도지사가 충청북도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운영위탁) 회관 운영은 충청북도체육회장(이하 “체육회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한다.

제 5 조 (운영지원) 도지사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체육회장의 책무) ① 체육회장은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조례 및 기타 도지사의 명령,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체육회장은 수탁받은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회관 운영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독립채산제로 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사업승인등) 체육회장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수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 3 조에서 정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2. 회관운영과 충청북도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 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
3. 회관운영을 위한 사업단 구성과 예산편성 및 제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의 경우
4.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

제 8 조 (감독)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체육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체육회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체육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체육회장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9 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회관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